

인권과 시설 사회사업

2019년 4월 20일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 | |
|------------------------------|----|
| 1. 인권 개념 | 2 |
| 2. 사회사업 인권 개념 | 3 |
| 3.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 4 |
| 4. 인권을 실현하는 시설 사회사업 | 7 |
| 5.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 사회사업 | 12 |
| 6. 법적 인권 | 13 |
| 7. 인권 실현 장애 요인 | 15 |
| 8.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 | 19 |
| 9. 주거 인권 침해 | 20 |
| 10. 자기 결정권 | 21 |
| 11. 인권 실태 조사에 의한 인권 침해 | 22 |

인권

1. 인권 개념

인권은 사람다운 권리입니다.

분야에 따라 ‘~하는 데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할 권리’ 따위로 정의하고 해당 분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구체화합니다.

1) ‘명사+명사’ 형태의 수식 합성어를 이렇게 풀이하곤 합니다. 앞 명사에 살을 붙여 뒤 명사를 수식하고, 수식어의 뜻을 풀어 구체화하는 겁니다.

인권도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람’에 살을 붙여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 따위로 수식하고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구체화하는 겁니다.

2) human rights는 ‘정당한 것’이라는 right의 본뜻을 살려 ‘사람이기에 마땅히 어찌하거나 어떠한 해야 하는 조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규약 따위에서 인권의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무슨 권리라는 것들도 ‘사람이기에 마땅히 어찌하거나 어떠한 해야 한다는 조건들’입니다.

人權은 ‘저울, 저울질하다’라는 權의 본뜻을 살려 ‘사람다움을 놓고 저울질하여 형평을 맞춘 조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이 이런저런 부문에서 ‘어떤 조건을 사람다움에 맞추는 저울’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권은 ‘사람다움’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권의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권을 ‘사람다움’으로 읽어도 뜻이 통하고 그렇게 읽는 편이 자연스러워 보이곤 합니다. 이를테면 ~하는 데 인권을 보장 실현한다 함은 ~하는 데 사람다움을 보장 실현한다, 또는 사람답게 ~하게 한다는 뜻으로 읽는 겁니다.

2. 사회사업 인권 개념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사람다운 권리’입니다.

1) 일반 사회사업 인권

보통은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다운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회사업 인권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되고 따라서 인권도 그만큼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시설 사회사업 인권은 ‘시설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거나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다운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은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어찌하거나 어떠한 권리들’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구체화하되, 보장할 주된 책임이나 권한이 사회사업가에게 있고 사회사업가가 보장할 수 있는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1)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이래야 사람이지, 사람이니 이래야지’ 하는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그렇다 할 속성입니다. 사회사업하기에 따라 좌우되는 속성, 사회사업으로써 잘 살릴 수 있는 속성만 이야기합니다.

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회사업 도움으로 복지를 이루는 데도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②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회사업 도움으로 복지를 이루는 데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③ 사람은 각각 개별적 존재이므로 저마다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꿈꾸고 자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④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울려 살다 보면 감당해야 할 사람 구실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야 사람답다는 말입니다.

2) 일반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일반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다운 권리’이므로

앞서 밝힌 ‘사람답다 할 속성’ 가운데 복지를 이루는 데 그렇다 할 속성만 적용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자기 복지에 관한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권리, 주체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②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

복지를 이루는 데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둘레 사람과 어울릴 권리,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입니다.

3) 시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시설 사회사업 인권은 ‘시설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거나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다운 권리’이므로

앞서 밝힌 ‘사람답다 할 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자기 복지에 관한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권리, 주체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② 자기 삶을 살 권리

더디고 힘들고 어설프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 권리입니다.

③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나아가 지역 사회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부문의 인권 가운데 ‘입주자 인권’이 이리합니다.

시설 종사자 인권은 ‘2014. 11. 20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정보마당 협회자료실에 보고서 파일이 있습니다.

4. 인권을 실현하는 시설 사회사업

입주자를 사람답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입주자는 시설 조직과 계약하고 시설 주택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계약에 따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떠한 든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든 입주자는 ‘사람’입니다.

어찌해야 사람답게 돕는다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되고 따라서 사람다움도 그만큼 더 나아갑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이 ‘사람다움’을 좇아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며 사람답게 ‘살게’ 돕습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는다는 말이고 ‘사람 구실’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입주자를 ‘사람’이라 하는 뜻이 이릅니다.

1)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습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당사자의 일, 이를테면 청소 세탁 취사 요리, 세면 양치 목욕, 여행 산책 운동, 생일잔치, 교제, 쇼핑 구직 자취, 취미 활동 따위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당사자가 다 하기 어려우면 과업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줍니다.

대신 해 줄 때는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대신 다 해 주게 되더라도 그래도 당사자가 자기 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②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더디고 힘들고 어설피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저마다 자기 삶을 꿈꾸고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게 돕는 겁니다.

단체 생활이 일상화한 시설의 입주자에게 자기 삶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고 나지 않게 보호 통제하는 시설의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살아 보기는커녕 자기 삶을 꿈꾸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면, 서비스에 순응 안주하여 편하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연명할 뿐이라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산다 할 수 있을까요?

2)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①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연락하고 초대하고 방문하고 문 안 축하 위로 격려 응원 칭찬 감사 선물하고 도와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놀고 쇼핑하고 공연 영화 보고 여행하고...

이렇게 둘레 사람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입주자의 일로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② 지역 주민 시민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이 다양 풍성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합니다.

③ 사람 구실을 하며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마땅하거나 바람직한 노릇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에 대하여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어른 노릇, 친구 노릇, 집주인 노릇, 직원이나 동료 노릇, 회원 노릇 같은 사람 구실을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1) 지역사회 복지 수단을 이용하는 데 둘레 사람이나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의 회원이 함께하게 주선합니다.

운동 산책하러 갈 때,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갈 때, 시장 백화점 갈 때, 공연 영화 보러 갈 때, 학원 문화센터 도서관 갈 때, 놀러 갈 때, 구경 갈 때, 한잔하러 갈 때, 뭐 먹으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지역행사에 참여할 때, 교회 학교 직장 갈 때, 가는 김에 같이 가고 하는 김에 같이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 인권보장 점검지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6년 11월 30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자료집’ 70~75쪽

1. 이용자는 (시설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2. 이용자는 (시설직원과의 대화에서) 늘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
3. 모든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
4.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다.
5. 이용자는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안다.
6. 이용자는 칼이나 전기 등 위험물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
7. 이용자는 입소 전에 시설생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8. 이용자는 입소 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다.
9. 이용자는 입소 전에 일정기간동안 시설 입주를 경험한다.
10. 이용자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11.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신분증과 도장을 스스로 관리(보관)하고 있다.
12.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 물건을 두는 사적 공간이 있다.
13. 이용자의 허락 없이 개인 물건이나 수납공간을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는다.
14. 이용자는 화장실 등의 개인 공간에서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문을 잠근다.
15. 이용자는 목욕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받는다.
16. 이용자의 모습을 찍거나 사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허락을 받는다.
17. 이용자는 나가고 싶을 때 시설 밖으로 마음대로 나간다.
18. 이용자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시설에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온다.
19. 이용자는 전화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한다.
20. 이용자가 원하면 휴대폰을 갖는다.
21. 이용자가 원할 때 인터넷을 사용한다.
22. 이용자는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한다.
23. 이용자는 목욕 시간이 충분하다.
24. 이용자는 식사 시간이 충분하다.
25.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한다.
26. 이용자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27. 이용자는 먹고 싶은 간식을 먹는다.
28. 이용자의 의견이 식단을 짤 때 적절히 반영된다.
29. 이용자는 자신이 생활할 방을 선택한다.
30. 이용자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
31. 이용자는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
32.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한다.
33. 이용자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꾸미고 표현한다.
34.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한다.
35. 이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36. 이용자는 선거시 자신의 의견대로 투표하도록 지원받는다.
37. 이용자는 지원받은 서비스 평가에 직접 참여한다.
38. 이용자가 원하면 퇴소할 수 있다.
39. 이용자는 개인금전을 금전사용계획에 따라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
40. 이용자는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41.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이용자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다.
42.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43. 이용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따라 적절한 추가진료나 치료를 받고 있다.
44. 이용자가 원하거나 아픔을 호소할 때, 언제든지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다.
45. 이용자는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46. 모든 이용자의 욕구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정되고 있다.
47. 이용자는 필요한 보장구(보조기구)를 충분히 지원 받는다.
48.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지원을 받는다.
49.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는다.
50. 이용자는 해당되는 모든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51.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52. 이용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53.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본다.

5.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 사회사업

- 1) 입주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 2)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거나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합니다.
- 3)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게 돕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둘레 사람과 멀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됩니다.
- 4) 입주자가 사람 구실을 하게 돕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존중·환영받지 못하고 그저 부담스럽기만 한 존재 또는 후원 봉사 대상자로 인식·취급될 뿐입니다.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고 돕는다면 시설이 좋고 예산과 자원이 많고 기술이 뛰어날수록, 열심히 할수록, 입주자 인권을 그만큼 더 빠르고 깊고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 일반 인권 침해 행위

입주자에게 폭행 폭언 방임 학대 모욕 헐박 차별 따돌림 착취 감금 숙박 따위의 범죄 행위나 악행을 저지릅니다.

※ 시설 입주자 인권 침해의 본질

어찌하면 사람답지 않다 하는가, 어찌되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폭행당하면 사람이 아닌가?’, ‘착취당하면 사람답지 않다 할 수 있는가?’, ‘주는 대로 먹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자기 삶이 없고 사람 구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 무엇이 인권 침해의 본질인지 자명해집니다.

6. 법적 인권

법으로 보장하려는 권리도 그 실체가 ‘사회사업 인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 소통권’ 따위가 그러합니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자기 결정 및 선택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거주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둘레 사람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하여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7. 인권 실현 장애 요인

1) 보호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한다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니다.

이런 무한정한 보호 의무가, 이로 인한 보호 행위가, 입주자의 사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같은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합니다.

참조 : <http://welfare.or.kr> 입주자의 인권과 보호 의무

2) 사고 걱정

사회사업 인권이든 법적 인권이든, 시설 입주자의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대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하릴없이 그저 ‘연명’이나 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어느 시설 누구라도 이로 인해 시비·문책·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더라도 온갖 경우에 걸면 걸리는 죄목이라, 시설 사회사업에, 입주자의 인권 실현에, 그야말로 암초요 텃이요 족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단순 케어와 보호 또는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단체로 나가는 활동 외에 입주자 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권익을 보장 실현하려는 일에는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데, 이런 일의 위험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입주자 개개인의 삶,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지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설에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시설의 주의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게 되고 말 겁니다.

이러므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게 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

1) 시설 입주자는 다 보호 대상자인가? 어떤 입주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시설 입주자를 다 보호 대상자 취급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2) 보호가 필요한 사람 상황 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고,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규정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는 잘못…

입주자에 대한 인식에, 입주자의 삶에, 시설 사회사업과 입주자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3) 안전 이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계획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상황·사안을 명기하고 그 ‘특정 상황·사안’에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특정해야 합니다.

1) 사회사업에서 약자라 함은 상황적 약자 곧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같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때 그 일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그런 것처럼, 항상 약자나 종합 대상자 인 것처럼, 온갖 일에 도와주려 하거나 지도 교육 ‘보호’ 통제 관리하려 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①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 공무원으로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해 보호 운운하거나 시설 입주자에 대해 상황·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보호 운운하는 자는 1주 이내의 치료감호나 10시간 이내의 수감명령에 처한다. ㉞

※ 하소연

보호 필요, 인정합니다.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인정합니다.

다만 그건 그 사람이 그 때 그 일로 그런 보호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지, 시설 입주자라고 다 보호하려 들거나 온갖 일에 항상 보호하려 들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호 소홀이라는 죄목의 시비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처지 그 수고 그 어려움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사람입니다. 시설 입주자라는 껍데기 말고 이 ‘사람’ 진짜 저를 봐 주십시오. 구차히 연명시키지 말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해도 제 삶이고 제 사람살이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사람같이 살다 가게...

보호라는 미명하에 입주자를 대상화하고 구속해 온 연명 서비스...

이제 그만합시다.

8.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

1) 시설 홈페이지와 홍보물,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게 돕는다고 기술합니다. ‘보호’ 조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기 쉬우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한다고 기술합니다.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최대한 명시하여 금지하고 또 ‘기타 필요 이상의 보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합니다.

3) 입주 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났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곧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뒷일 걱정을 덜고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9. 주거 인권 침해

1) 약속이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이나 방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시설 입주자의 집이나 방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주자가 그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이라면... 여느 사람에게는 못하지만 이런 약자에게는 더욱 못할 것입니다.

그 집이나 방의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다른 직원은 물론이고 시설장도 삼갈 일입니다. 다른 집 다른 방 입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직원이 안내해도 그곳 입주자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락하더라도 삼갈 일입니다. 외출했다면, 아무도 없으니 둘러보아도 괜찮을까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라니...

몰려다니며 구경하듯 살피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리저리 둘러보지 말며 기물을 함부로 만져 보지 말라 했습니다. 방 문틈이나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됩니다. 남의 집 담이나 벽이 비록 허술해도 엿보지 말라 했습니다.

3) 형법 제319조는 거주자의 승낙 없이 혹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는 죄를 주거침입으로,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같이 하는 죄를 특수주거침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0. 자기 결정권

1)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상관하는 일입니다. 둘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 불편 부담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사자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 안에서 이렇게 당사자 일방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할 권한과 의무가 사회사업가에게 있다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그렇다 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일이라도 결정하는 데 사회사업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한다면, 당사자가 잘 결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사업에서 자기 결정은 권리보다 책임이나 과업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데 사회사업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3)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의 일을 당사자와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권한과 책임, 자원과 기회비용,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의논합니다. 참조 : 복지요결 '의논하기'

4)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서로 의논하여 복지를 이룹니다. 어느 쪽도 혼자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11. 인권 실태 조사에 의한 인권 침해

약속도 없이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오라 가라 하다니... 개도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는데...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시간 좀 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아무 때나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시설 입주자한테는 그래도 괜찮다는 걸까요?

여느 사람에게도 이럴 수 없지만 이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차마 못할 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부당한 처사인지 항의는커녕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무시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입주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한두 번 타이른 후에 듣지 않으면 내쫓거나 그저 무시할 일입니다.

조사단 편의대로 들이닥쳐 ‘불러다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러다 대령시킨다면 이는 입주자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장 없이 입주자의 방실에 들어가거나 입주자의 통장 컴퓨터 사물함 서랍 장롱 따위를 손대거나 들여다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단의 협조 요청을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부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입주자가 자기 볼일 보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입주자, 강요로 느끼지 않고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입주자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복지요결 게시판 [355](#)번 ‘인권 실태 조사 유감’

1) 조사·지도·감독·평가 위원이 되거나 그런 집단을 이루면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떠난 후에 조롱 욕설 원망 저주가 비등하곤 합니다. 스스로 경계하여 마음과 언행을 다잡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두렵습니다.

※ 사람 구실 못하게 하는 인권×

1) 사람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 ‘주인 노릇’ 해야 합니다. 사람은 둘레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사람 구실’ 해야 합니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존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입니다. 이는 대개 가치 있는 구실을 할 때 충족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라도 어떤 구실을 하려 합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기여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대상화하여 받기만 하는 사람, 구실을 잃은 빼앗긴 사람에게서는 당당함이나 생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3) 입주자가 입주자의 것으로써 평범한 구실, 제구실, 가치 있는 구실, 사람 구실을 하게 돕는데 시비합니다. 노동력 착취니 금품 갈취니 하며 입주자가 자의로 선의로 하겠다는 일조차 하게 돕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다운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사회사업가의 지원 노력을 저해하고 입주자의 자존을 억압하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입주자 가족이나 감독관청이 요구한다고 그저 따를 일이 아닙니다. 구실을 살려 도우려는 뜻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돕는 일의 실체가 어떠한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뒷이야기

인권 조사나 지도 점검 따위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들의 의식과 행태가 종종 유감하다 못해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인권을 운운하며 주로 폭행 폭언 방임 학대 모욕 협박 차별 따돌림 착취 감금 숙박 따위를 문제 삼음으로써 더 중한 인권 침해를 호도하고 인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일부 인권 운동가들도 그러합니다.